
감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송의1·3동 자체종합감사 -

미추홀구

□ 감사목적

- 주민자치센터,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자원순환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2026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기관)
-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 [감사실-11478(2025.12.16.)호]

□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 감사기간: 2026. 4. 9.(목) ~ 4. 14.(화) **【4일】**
- 감사범위: 2023년 3월 ~ 2026년 2월 (3년)
- 감사분야: 송의1·3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장 외 4명 및 구민감사관 1명

□ 중점 감사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
- 예산·회계·공사 업무 처리 전반
-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청소업무 등 추진실태 등
- 통합민원처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불합리한 관행 제도 개선(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II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구분	계	시정	주의	비고
건수	19	10	9	

□ 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1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요구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고 미이행	시정 요구
3	일반행정	민원접수 누락 및 지연처리	주의 요구
4	복 무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시정·주의 요구
5	계 약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6	회 계	업무추진비 관리 부적정	시정·주의 요구
7		교육훈련여비 수령자에 대한 여비 중복 지급	시정 요구
8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관리 소홀	시정 요구
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시정 요구
10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요구
11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요구
12	인 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요구
13	사회복지	장애인 재판정 촉구 통지 지연	주의 요구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기재 부적정	시정 요구
15		청소년증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16	자원순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Ⅲ

지적사항 세부내용

주 민 자 치

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확정된 자치계획안, 주민총회 개최결과,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등은 주민 공개 대상임에도 2026년도 확정된 자치계획과 2025년도 상·하반기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회계출납부의 월계만 기재하고 일·분기·반기·연계 결산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입계좌의 결산 이자에 대한 수입결의서 작성을 누락하였음.
- 아울러 만족도 평가와 주민자치회 심의 등을 거쳐 계약 기간 만료 전 체결하여야 할 프로그램 강사 재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20여 일 후에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② 주민자치회 위원 공고 미이행 [시정]

-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및 위촉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구청 및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음.

일 반 행 정

① 민원접수 누락 및 지연처리 [주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고충 민원으로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할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 관련 이의신청 민원을 시스템 상 접수·등록을 누락, 적정 처리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답변함.

복 무

①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시정·주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미성년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돌봄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별도의 증빙 없이 유급 돌봄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봉급일액을 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 약

1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 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 및 제3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 이행 지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률과 지연배상금률을 각각 정해야 하나 계약보증금률이나 지연배상금률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한 채로 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공사계약의 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용역·물품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접수한 서류를 시스템에 접수·등록, 기록물로서 관리하고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¹⁾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착수·완료신고서를 온나라시스템에 접수·등록하지 않거나 지연 접수하였고, 최대 3일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되며, 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1)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 7. 1.부터 2026. 6. 30. 까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만료전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1일 후 실시한 사실이 있음.

회 계

① 업무추진비 관리 부적정 [시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함) 【별표2의2】 '4.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미추홀구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서는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도 구매대장 작성을 누락하였고 훈령에 따른 공개 대상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1건을 누락한 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② 교육훈련여비 수령자에 대한 여비 중복 지급 [시정]

- 미추홀구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7조에서는 같은 날짜의 여비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금액이 큰 여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여비가 지급된 사람에게 관내출장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 민 등 록

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관리 소홀 [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 방지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에 수기로 기록하여야 하나, 11명의 출생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등 내용을 전혀 작성하지 않거나 한자 기재를 누락 또는 성명을 오기재 한 사실이 있음.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처리 가이드』에 따라 자연훼손, 기재사항 변경, 변경내용란 부족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되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회수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으며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인 경우 재발급 수수료 외 IC칩에 대한 수수료 5,000원을 추가 징수하여야 하나 수수료 부과 대상임에도 무료로 처리하거나 재발급 신청서에 수수료 금액을 인증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 자에게는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과태료를 과소 부과함.

④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야 하나 출생신고 지연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과태료를 착오로 과다 부과함.

인 감

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대리인 자신의 무인을 하며, 발

급기관은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대리인 무인을 받지 않거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발급번호 미기재 및 오기재하였으며 발급대장의 신고인란과 대리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상호 오기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사 회 복 지

① 장애인 재판정 촉구 통지 지연 부적정 [주의]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록장애인의 재판정”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기한 3개월 전에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여 재판정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1개월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정 촉구를 최대 5일까지 지체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②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기재 부적정 [시정]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 요건에 해당하여 발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되 재판정이 영구 제외된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9999. 12. 31.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 재판정이 영구 제외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표지에 유효기간을 9999. 12. 31.로 표기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③ 청소년증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만 14세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이 변형 가능한 이미지

· 스티커·복사 사진 등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 14세 미만 청소년증을 신청인들의 법정대리인 서명 없이 발급하였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물을 제출받고 보완 요구 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자 원 순 환

①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일반기준 다.’에 따라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½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그러나 위반행위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이라 인정할 단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확인서 제출만을 근거로 과태료 50%를 감경하거나 위반행위 별 과태료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수범(미담)사례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찾아가는 가위든 천사
사업기간	○ 2025년 3월 ~ 현재(연중)
사업개요	○ 사업대상: 거동불편 저소득 취약계층 ○ 사업내용: 지역사회 이·미용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재능기부 가정 방문하여 매월 커트봉사 실시
사업효과	○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만 생활하던 70세 박00님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으로 점차 마음을 열고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 ○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는 아내를 집에서 20년 동안 간병하며 아내의 머리 손질을 일반 가위로 직접 하고 있었으나 매월 이 사업을 통하여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봉사에 참여하는 원장님들도 대상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봉사자의 방문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음.
예 산 액	○ 비예산(자원봉사자 연계)

관련사진

